

---

“식품안전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2009. 5.20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의의	1
1. 수립배경	1
2. 식품안전 정책환경의 변화	
2-1. 식생활의 변화	2
2-2.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식품의 증대	2
2-3. 수입식품의 증가	3
2-4. 선진국과 비교한 식품안전 수준	4
3.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
II. 식품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	6
1. 기본방향	
1-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6
1-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7
1-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8
1-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9
2. 목표 및 비전	10

III. 주요 정책과제 .....11

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1-1.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1-1-1. 농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강화 ..... 11  
1-1-2.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 12  
1-1-3. 사료관리 ..... 13  
1-1-4. 축산물 도축·유통단계 위생수준 제고 ..... 14  
1-1-5. 친환경식품 관리방안 ..... 16  
1-1-6.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 17  
1-1-7.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강화 ..... 19  
1-1-8. 안전한 기능성식품 생산관리 ..... 22

1-2. 식품의 유통·판매 안전성 증대

1-2-1. 이력추적제 확대 ..... 23  
1-2-2. 유통식품 안전관리망 구축 ..... 24  
1-2-3. 식품보관 관리방안 ..... 25

1-3. 식품 위해관리 강화

1-3-1. 식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 확대 ..... 26  
1-3-2. 유해물질관리 강화 ..... 28  
1-3-3.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방안 ..... 30  
1-3-4. 첨가물·용기·포장 관리방안 ..... 31

<b>1-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b>	
1-4-1. 생산지·수출지 안전관리 .....	33
1-4-2. 통관단계 관리 .....	34
1-4-3. 수입식품 국내 유통단계 관리 .....	36
<b>1-5. 효율적인 검사 및 감시지도</b>	
1-5-1.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	38
1-5-2.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 .....	40
<b>1-6. 안전한 급식시스템 운영</b>	
1-6-1. 예방관리 강화 및 신속 검사·원인규명체계 구축 .....	41
1-6-2. 취약시설 집중 지도·점검 .....	43
1-6-3.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	44
1-6-4.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45
1-6-5.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	46
1-6-6.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47
<b>1-7. 위기대응기반 구축</b>	
1-7-1. 위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	48
1-7-2. 위해식품 회수전담반 설치·운영 .....	49
1-7-3.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50
<b>1-8. 위해사범 단속 및 영업자 책임 강화</b>	
1-8-1. 식품위해 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	51
1-8-2. 원산지 표시 및 가짜상품 단속 강화 .....	53
1-8-3. 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	54

##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 2-1. 식품 위해성평가의 과학성과 독립성 강화

2-1-1. 과학적 위해성평가 강화 .....56

2-1-2. 위해성평가의 독립성 강화 .....57

### 2-2. 식품안전 R&D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2-2-1. 식품 안전성 연구 강화 .....58

2-2-2. HACCP 및 위해분석 전문인력 양성 .....60

2-2-3.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61

## 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 3-1.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3-1-1.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62

3-1-2. 소비자 대상 정보 공개 및 교육 확대 .....64

3-1-3. 가정에서의 식품안전·위생 정보 제공 .....66

### 3-2. 식품 표시기준 합리화

3-2-1.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 개선 .....67

3-2-2. 원산지 표시제도 등 개선 .....68

### 3-3. 적정한 영양성분 섭취 관리 추진

3-3-1. 위해가능 영양성분 중점관리 .....69

3-3-2. 어린이 식생활환경 개선 .....70

3-3-3.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홍보 강화 .....72

## 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 4-1. Codex 등 국제적인 협력강화

- 4-1-1. Codex 협력 강화 .....73
- 4-1-2. 외국정부와 식품안전 MOU확대 .....75

### 4-2. 식품안전 정보관리 체계 강화

- 4-2-1. 식품안전정보 수집역량 강화 .....76
- 4-2-2.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77

### 4-3. 부처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 4-3-1. 식품관련 규정 관리 .....78
- 4-3-2. 정보 공유 체제 구축 .....79
- 4-3-3.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조정역할 강화 .....80

### 4-4. 중앙-지방정부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 4-4-1.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 관리 강화 .....81
- 4-4-2. 안전성 검사에 지자체와 협력 강화 .....83

## IV. 향후 추진방안 .....84

<붙임1> 과제별 추진내용 .....85

<붙임2> 법령 제·개정 사항 .....93

# I.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의의

## 1. 수립배경

### □ 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수준 향상

- 국민소득의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과 영양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향상
- 수입국의 다변화, 제조가공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소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로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
  - \* 수입김치 안전성 문제('05.10), 녹차에서 파라티온(농약) 검출('07.8), 스낵·참치통조림·수입 냉동 야채가공품에서 이물질 발견('08.3), 이유식에서 멜라민 검출('08.9) 등

###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범정부적인 식품안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별로 수행중인 식품안전 행정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을 강화하고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08.6)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라('08.1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적 합리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 2. 식품안전 정책환경의 변화

### 2-1. 식생활의 변화

#### ① 식생활의 간편화·외부화

-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의 취업 및 독신가구 증가 등에 따라 외식 소비가 확대되고, 조리식품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증가

<소비자 가구당 식품 소비 지출 추이(통계청)> (단위 : 원, %)

연도	식료품전체 (A)	신선(B)	B/A	가공(C)	C/A	외식(D)	D/A
1990	220,834	144,667	65.5	31,323	14.2	44,844	20.3
2000	447,019	216,013	48.3	55,016	12.3	175,990	39.4
2005	551,584	218,145	39.5	77,589	14.1	255,850	46.4

- 칼로리,나트륨 등이 높은 패스트 푸드와 음료의 섭취 증가로 비만·당뇨 등 생활 습관병 발병률이 높아져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예상
- \* 현재의 비만 인구 추세로는 2025년 국내 성인 2명당 1명은 비만환자로 예상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② 집단 급식소 등 단체 급식기회의 증가

- 전국 11,106개교(전체의 99.7%, '08)에서 총 800만명에게 급식실시(학생:760만,교직원:40만)
-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어촌지역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의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증가 예상

	2005	2006	2007
식중독 발생 총계	109(건)	259	510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6	51	97

### 2-2.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식품 증대

#### ① 유전자재조합(GM)작물 재배의 증가

- GM(Genetically Modified) 농산물의 세계 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ha에서 2008년 1억2,500만ha로 약 74배 증가
- \* 미국 : 6,250만ha, 아르헨티나 : 2,100만, 브라질 : 1,580만, 캐나다 : 760만, 인도 : 760만

## ② GM 식품의 시장 유통 확대

- GM 식품 수입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GM 식품 구매 기회가 증대

### < GM 식품 수입 현황 >

(단위 : 건, 톤)

구분	2006		2007		2008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농산물	대두	55	886,070	49	1,030,329	77	932,099
	옥수수	1	12	6	99	47	792,371
	소계	56	886,082	55	1,030,428	124	1,724,470
가공식품	2,467	6,220	3,357	8,551	3,659	9,707	
총계	2,523	892,302	3,412	1,038,979	3,783	1,734,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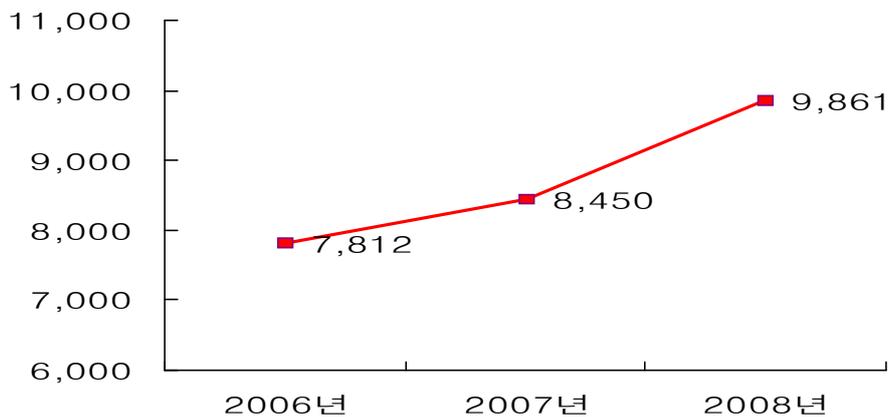
## 2-3. 수입 식품의 증가

### ① 수입 식품의 증가

- 낮은 수준의 식량 자급률('05:29.2%)과 국산 식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FTA의 확대에 따라 수입식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식품수입액 현황 >

(단위: 백만\$)



\* 식량자급률(물량자급률기준) 변화 : 29.4%('05) → 27.7%('06) → 27.2%('07)

### ② 수입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

- 일부 수입 식품의 안전성이 자주 논란이 됨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

\* 수입식품으로부터 멜라민 등 위해화학물질, 이물질 검출 사례

## 2-5.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 수준 비교

지 표 명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	대만
· 식품안전 국민신뢰도	40%('08)	65%('05. 영국)	81%('08)	53%('08)	-
· 관리대상 유해물질	1,713개('09.1)	1,882개	1,054개	1,844개	1,249개 (미생물규격제외)
· HACCP 적용업소비율	2.1%('08)	모든 제조업소에 적용등록 권유('06)	7.4%('05)	4.1%('08)	0.9%('05)
· 위해 · 불량 식품 회수율	26.5%('08)	-	36%('03)	-	-
· 유통식품 부적합율	0.97%('08)	-	1.1%('02)	-	6.4%('05)
· GMO 식품 표시제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GMO 사용 가공식품	표시안함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식중독환자수/백만명	156명('08)	105명('05)	86명('06)	162명('07)	154.4('05)
· 과학적 위해평가 위원회	식품·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유럽식품안 전청/과학패널	발암평가위원회· 정량적위해평 가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
·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중대식품위해사범 에 대해서는 최소 3년이상 징역	2년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영국)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불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구제제도	단체소송제	단체소송제 (독일 프랑스)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 3.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식품안전기본법에 제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립
  -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II. 식품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

### 1. 기본방향

#### 1-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risk) 관리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한 식품을 위한 생산·제조·유통·판매단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질병 발생을 억제**

##### ①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농축수산물의 생산 환경 및 농약·동물용의약품·사료를 관리함으로써 농장부터의 안전을 확립하고, 식품 제조업소의 HACCP 인증 강화로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관리를 강화

##### ② 식품의 유통·판매 안전성 증대

- 이력추적제의 확대 실시와 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중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검사망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온도이력 관리 등을 통해 냉장·냉동식품의 안전한 보관을 강화

##### ③ 식품 위해관리 강화

- 과학적인 위해성평가를 기초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하고, GMO를 비롯한 새로운 식품과 첨가물·용기·포장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반 구축

##### ④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수준 현지점검 및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 유통경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며, 유해물질 검출 제품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 ⑤ 효율적인 검사 및 감시지도

- 검사기관의 운영시스템 개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정성 및 신뢰성을 회복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

## ⑥ 안전한 급식시스템 운영

- 식중독 주요 발생원인인 노로바이러스 집중 관리 및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학교 급식시스템 개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식중독 저감화 추진

## ⑦ 위기대응기반 구축

-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영하여 위해 정보 입수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며, 위해식품 신속회수를 위한 회수 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식품 등의 위해발생 경보제도를 시행

## ⑧ 위해사범 단속 및 영업자 책임 강화

-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 및 형량을 강화하고, 수입 OEM식품에 대해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대기업·대형 백화점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대기업 등의 위생책임을 강화

## 1-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과학에 근거한 위해성평가와 이를 위한 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 인력양성**

### ① 식품 위해성평가의 과학성과 독립성 강화

- 과학적인 위해성평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해성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

## ② 식품안전 R&D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식품 기준규격 체계 및 식품위해분석,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기준 설정에 과학적 기반 강화
- 안전성 검사 및 위해분석 전문인력 등의 교육·훈련을 확대하며,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

## 1-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소비자·업계·정부 간 소통 강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 조성**

### ①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소비자탐사대」·「농소정협의회」 등을 통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식품안전 행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 ② 식품 표시기준 합리화

- 원산지 표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특정 원료 함유 식품의 원료함량 표시방법을 개선

### ③ 적절한 영양성분 섭취 관리 추진

-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을 중점 관리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 저감화를 집중적으로 추진

## 1-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외국정부·국내 식품안전  
관련부처·지자체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의 강화

### ① Codex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

- Codex 등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및 식품 규격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주요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 ② 식품안전 정보관리 체계 강화

- 국내외 민·관간 위해정보 공유·협력체계 등 식품안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
- 식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체계 운영,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사후 처리를 신속히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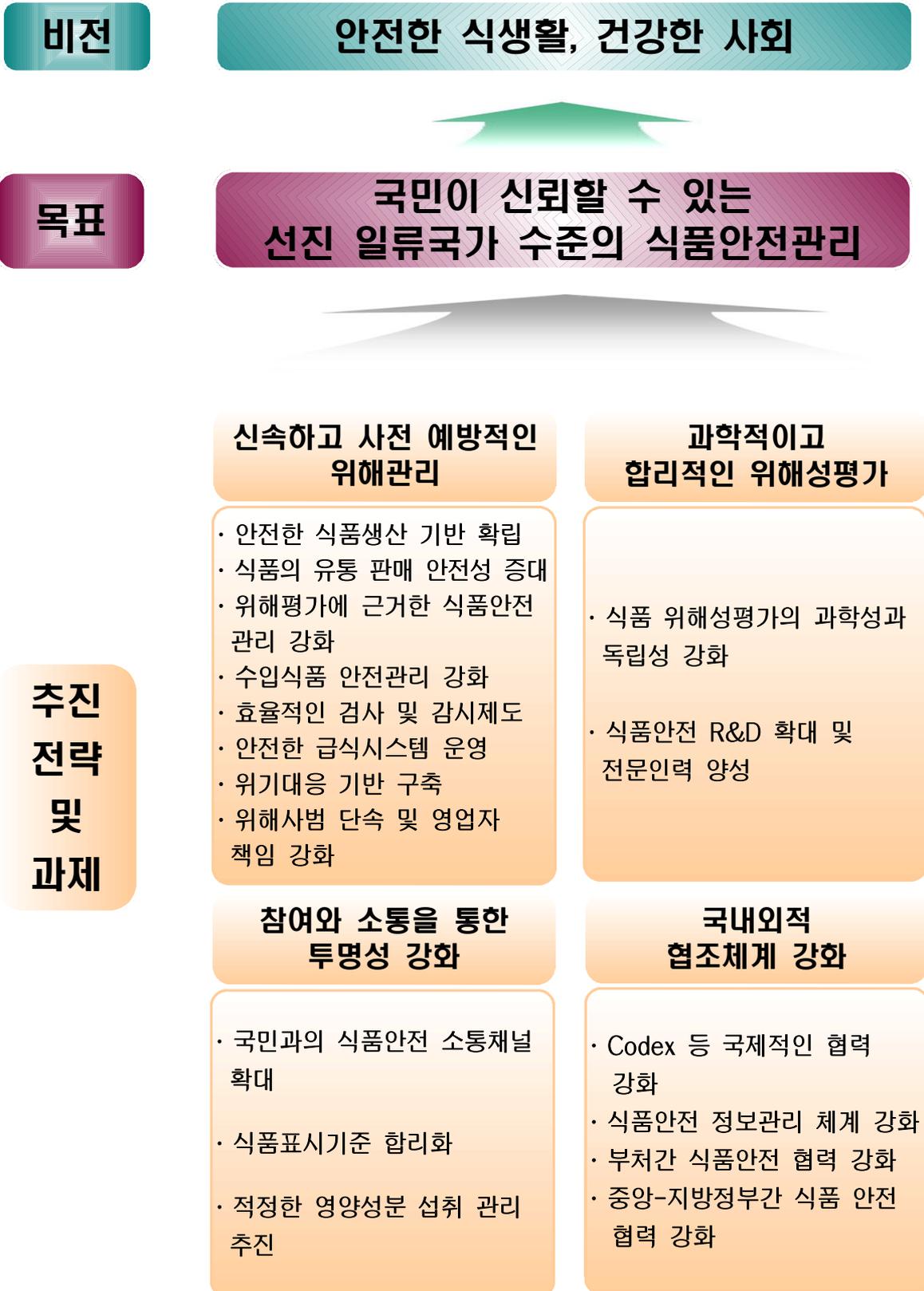
### ③ 부처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 각종 심의회에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식품관련 기준·규격 정비 시 관련기관간 사전협의 강화

### ④ 중앙-지방 정부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 규정제정, 단속·처분 등 정책집행 및 식품사고 긴급대응 시 중앙-지방간 협의와 협력을 강화

## 2. 비전 및 목표



### III. 주요 정책과제

## 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 1-1.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1-1-1 농수산물 생산 환경 관리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식품 공급체계 확립
  -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유해요소 관리
  - 노후된 축사시설, 밀집사육 등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개선
  - 수산물 생산 해역의 안전평가를 통한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및 관리

#### 2. 추진계획

- 잔류농약, 중금속 및 유해미생물 등을 중점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HACCP 등 확대
  - 상토, 배지, 양액 및 수확후처리 약제 등 농업자재 안전관리 강화와 GAP 관리시설·대상품목·인증농가 확대
    - \* GAP 대상품목 대폭확대 : ('08) 105개 → ('11) 170개
  - 축사, 어장, 도축장 등 사육단계와 생산과정에서 HACCP 적용 확대
-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수산해역 위생관리 확대
  -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면적 준수 지도
  -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 세균, 패류독소 등을 조사하여 해역별 등급설정

## 1. 배경 및 필요성

- 농약의 불법유통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잔류기준 초과 농산물 유통으로 국민의 불안 가중
  - 불법으로 수입된 농약의 유통과 소면적 재배 작물에서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 지속 발생
-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 강화가 필요

## 2. 추진계획

- 농약 판매관리 강화 및 안전사용기준 개선
  - 농약 판매기록 의무 확대
  - 미등록 소면적 재배 작물 농약 직권 등록 확대 및 안전사용기준 개선
    - \* 직권등록 농약수 : ('08)144품목(누계) → ('11) 230
- 동물용의약품 품질 및 유통관리 강화
  - 원료약품 등록제 도입 및 기 등록 약품의 재평가 실시
  -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적용 확대
  - 유통(판매)중인 동물약품의 사후관리 강화
  - 부작용 모니터기관 지정 확대 운용 : ('08) 20개소 → ('11) 100
  - 이미 허가된 품목의 재평가 실시
    - 재평가 품목 확대 : ('08) 199품목/년 → ('11년 이후) 300이상
  - 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확대('10년)
  - 약효 동등성 입증시스템 및 원료약품 등록제 등 도입 운영('11년)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사료의 주요 인수공통 질병 미생물 오염감소 및 항생제 감축 등 위생관리 강화
  - 사료 안전성이 우려되는 새로운 유해물질(멜라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 사료의 제조·포장·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하는 사료공장의 HACCP 적용

## 2. 추진계획

- 축산물에 항생제 등 잔류방지를 위해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를 감축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11년까지 사료에 혼합 가능한 항생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 (종전) 53종 → ('05.5부터) 25 → ('09.1) 18 → ('11) 9
- 사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분석방법 개선을 위해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09년)
  - 사료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 사용
-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11년까지 90개(전체의 96%) 배합 사료공장에 대해 HACCP 지정추진

## 1. 배경 및 필요성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되는 모든 가축은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자체 검사관(소·돼지) 또는 업체소속 수의사(닭·오리)가 검사하며, 도축전 임상검사와 도축후 내장 등 검사로 이루어짐
  - 도축장 개소당 검사인력은 소·돼지에 평균 1.6명, 닭·오리에 2명 수준으로서 일본(각각 11.1명, 3.6명)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
  - 도축장 가동률 저조 및 경영 부실에 따른 위생시설 투자 미흡
- 유통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는 미생물 오염 및 증식이 주를 이루며, 문제발생시 추적이 가능한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함께,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가 주요한 관리수단
  - 미생물 오염 및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냉장유통 기준 강화 및 포장유통을 시행 중
  - 쇠고기의 이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국산·수입산 쇠고기의 이력 및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을 도입 중

## 2. 추진계획

- 영세한 도축장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검사관 인력확충
  - 도축장 수 : ('08) 104개소 → ('09) 99 → ('11) 90
  - 검사관 : ('08) 1.6명/도축장 → ('09) 1.7명 → ('11) 2.0명

□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감시 강화 : 취약시기 기획단속, 불량 축산물 신고업체 집중단속 등
- 불량 축산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거검사 확대
-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위해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육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온유통체계(콜드 체인) 강화
  - \* 유통온도 기준 강화 : (현행)  $-2^{\circ}\text{C} \sim 10^{\circ}\text{C}$  → (강화)  $-2^{\circ}\text{C} \sim 5^{\circ}\text{C}$

□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 '09.6월까지 모든 소의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09.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
-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도입

□ 식육에 대한 도축장 실명제, 포장유통 조기 정착

-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도축장 실명제 이행실태 점검 및 단속 실시
- '10년까지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전면 의무화

□ 도축장 시설 개선 추진

- 지육 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경매·가공시설 설치
  - 도축장 내 육가공시설 확대 : ('08) 30% → ('11) 90%
- 10년까지 도축장 10개소에 SRM 제거시설 설치
  - SRM 폐기물 처리장(시도 시험소 소각장 등) 설치 추진

## 1.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지력증진, 생산지원, 인증관리, 유통·소비의 분야별 사업 추진

○ '13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10% 목표(저농약제외, 08년 3.6%)

## 2. 추진계획

□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대체 유도

□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및 실천농가 경영안정 지원

○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업환경 유지·보전 및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금액 확대

○ 친환경 수산물 확대 : ('08)7품목(양식어류·패류·해조류 등) → ('11)25

□ 친환경인증·유기가공식품인증 제도 개선

○ 친환경인증 중 저농약인증을 폐지('10년)하고 유기·무농약 2단계로 간소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통합 및 확대로 유기가공식품 신뢰도 제고('10)

○ 유기인증 농식품의 사후관리 강화, 인증제도 및 인증품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인증제도의 활성화 도모

○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인증체계를 아우르는 (가칭) '한국농식품규격(KAS : Korean Agro-food Standard)' 도입 연구·검토

## 1. 현황 및 문제점

- 냄새, 녹물 등 수도물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1.4%에 불과
- 먹는물 중 미량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및 먹는물 검사기관 부족으로 검사능력이 제한
-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파악 및 관리기반 미흡
  -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추세이나, 체계적인 감시·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적극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 노출
- 수도물 이외 먹는샘물, 정수기, 약수터 등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에 대한 관리기반 미흡

## 2. 추진계획

-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 수질 감시항목 및 정수처리기준 강화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 바이러스) 지정 확대('09년 12개 → '11년 16개)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강화
  - 전국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 지하수(다중이용)시설 대상 오염실태 및 정밀 조사 지속 추진

- 노로바이러스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10)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표준분석방법 마련

- 지하수 이용시설 및 오염원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정수기, 약수터 관리강화

-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실시되어 온 먹는샘물 품질인증제의 법제화 추진('09)

-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에 민간단체 참여, 품질검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수거검사 대상 확대로 정수기 품질관리 강화 추진

- 약수터 미생물 제거를 위한 자외선 살균기 설치 지속 추진 및 「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관리강화 및 부적정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 1. 배경 및 필요성

- 원료에서부터 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HACCP 제도의 대폭 확대추진 필요
  - 환경오염, 유해물질 첨가 등 위해요인의 의도적·비의도적 증가로 사전에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HACCP 확산 필요성 증가
  - 식품제조·가공업 중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국민 다소비 식품 중심으로 HACCP 적용 의무화 시행('05.10)

< 식품 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 지정 현황('09년 4월 현재)>

총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 (학교급식)
	소계	HACCP 의무적용 품목								일반품목 (도시락)	
		소계	비가열	빙과류	냉동수산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	배추김치		
564	528	302	7	22	105	42	29	12	85	226(2)	36(6)

\* '03년 76개소 → '09년 4월 564개소

- 축산물은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HACCP 적용
  - '98년 도축장·가공장에 최초 도입('03년 전 도축장 HACCP 의무적용)
  - 사료공장('01), 축산물 운반업·보관업·집유업·판매업('04), 가축사육농장('06)에까지 도입하여 Farm-to-Table HACCP 구축
- 중소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HACCP 적용 능력 부족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체의 재정기반 취약 및 전문인력 부족 등 HACCP 적용 역량 미흡
    - ※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지정업체는 2.0%임
  -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적용 자금 및 전문 기술 지원 등 필요

## 2. 추진계획

### □ HACCP 적용업소 지정 대폭 확대

- '11년까지 HACCP 인증업체를 3,0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확보

\* '08년 475개소(식품제조가공업의 2%) → '11년 3천개소(식품제조가공업의 13%)

#### < HACCP 적용업소 지정 계획('09~'11) >

구 분	'08까지	'09	'10	'11
지정(개소)	475	525	1,000	1,000
총 계	475	1,000	2,000	3,000

-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식품의 단계적 HACCP 의무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

\* 어육가공품(어묵류)/냉동수산물(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빙과류/비가열음료/레토르트식품/배추김치

- 2011년까지 국내 축산물 생산·유통량의 75% 수준 적용(대상 업소수 대비 8%, 4,000개소 목표)

- 축산물 HACCP기준원 심사인력 확대('11년까지 120명 수준)하여 매년 6천개소 지정심사 및 정기심사 가능토록 조치

- 양식장(넙치, 뱀장어, 송어 등) HACCP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를 통한 수산 양식장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 양식장 : 122개소('08, 9.3% 수준) → 240개소('11, 18%까지 확대)

### □ HACCP 적용업체 지원 강화

- 중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대책 마련·시행('09~)

- HACCP 적용을 초기부터 완료까지 책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 \* '09년 100개소(5억원) → '10년 300개소(15억원) → '11년 500개소(25억원)

- HACCP 지정을 원하는 영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위해분석 지원

- 지자체와 협조하여 영세업체의 기본 위생시설 설치 자금 지원

-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자금의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사업 강화

- 중소기업업체 중심의 HACCP 기준 개발·보급('09)

- 중소기업체의 HACCP 투자 비용을 절감(5억~2억원→5천만원이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저비용 소요기준 마련

- HACCP 적용을 쉽게 해설한 지침서 보급 확대

- 축산물 HACCP 적용 시설개선자금 지원('09년, 600억원)

-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시설 HACCP 운용관련 시설 개보수

## □ HACCP 적용업체의 운영관리 철저

- HACCP 지정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전년도 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평가 실시(연1회 이상)

- \*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HACCP 기준 적용 운영현황 점검

- 기준 미준수 업체 및 위해우려업체에 대한 특별 조사·평가 확대

##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영세성
  - 제조업소의 영세성으로 제품의 다양성 부족 및 국제 경쟁력 약화
  - 개별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중 국내 개발원료는 12%에 불과
-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피해사례 증가
  -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섭취로 피해사례 증가
-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사제품 유통·판매 급증
  - 국내·외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통한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급증

## 2.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확대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업소 GMP 컨설팅 비용 지원('09~11)
  -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 및 제품화 기술지원 확대('09~11)
- 국내개발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대한 기술컨설팅
  -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09~11)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부작용 신고 네트워크 구축
  -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09~11)
  - 부작용 신고 네트워크 구축 및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결과 공개('09~11)

## 1-2. 식품의 유통·판매 안전성 증대

### 1-2-1 이력추적제 확대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록·관리·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쇠고기의 위생·안전체계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소의 생산·사육·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 2. 추진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이력정보서비스 확대
  - 농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 수산물 이력추적제에 어업인·유통·판매자 참여 확대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 및 돼지고기 등 식육으로 확대
- 기업의 이력추적도입 지원 및 확산 추진
  - 기업의 이력추적도입 부담을 줄이고, 쉽게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및 교육

## 1. 배경 및 필요성

- 유통식품의 안전기준 위반여부에 대하여 매년 검사 실시
  - 고춧가루 등 30대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매년 감소 추세
- 보따리상 등 안전관리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휴대용으로 검사 없이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인터넷 판매 식품 등 안전관리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 미흡

## 2. 추진계획

- 시중유통 농·축·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적 검사망 구축
  - 현재 20만건 검사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약청·지자체·대학·민간검사기관도 참여하는 국가적 안전망 구축
    - \* '09년 23만건, '10년 26만건, '11년 30만건
    -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위해항목 중심의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이력 및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 유통과정 중 안전관리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 온/오프라인 판매식품 집중관리를 통한 유통식품 안전관리망 강화
    - 전문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판매 사이트 폐쇄, 판매대행인 고발 등 조치 강화
    -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기획 단속 및 반복·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추적관리 실시
  - 소무역상(보따리상) 휴대반입품 점검 강화
    - \* 농산물에 대해선 잔류농약, 이산화황, 타르색소 등을 중점검사 병행

## 1. 배경 및 필요성

□ 물류창고 및 대형 유통매장의 식품보관에 대한 관리 필요

- 냉장 및 냉동제품, 식자재 창고 등의 관리를 소홀이 하여 미생물의 증식과 이물 등 혼입으로 식품 사고발생 발생 우려 상존
- 기후 온난화 등으로 냉장 및 냉동제품의 관리필요성 증가

□ 식품운반차량의 온도관리

- 냉장 및 냉동제품 운반차량의 온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복적 문제지적
  - \* 김밥, 샌드위치, 주스 등 냉장식품을 실온으로 운반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

## 2. 추진계획

□ 식품물류창고 및 운반차량의 온도 관리 방안 마련

- 냉장·냉동식품의 물류창고, 운반차량 등에 대해 온도기록장치 부착 의무화를 통한 온도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식품물류창고 등의 보관 기준 마련

- 식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 및 식자재 창고 등에 대해 식품과 공산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

## 1-3. 식품 위해 관리 강화

### 1-3-1 식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 확대

#### 1. 배경 및 필요성

□ 선진국 대비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 미흡

- EU 등 선진외국과 비교,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등은 다소 미흡한 수준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기준의 지속적 강화 필요

- 수입식품 급증 및 국민의 식품안전관리 강화요구에 따라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 유해물질 기준 강화 필요

#### 2. 추진계획

□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식중독균 등 미생물

- “정량규격”이 가능한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별 정량규격 설정
- 식중독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매개바이러스의 시험법 확립 및 모니터링 집중 실시
- 국민기초식품에 대한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 기준 신설 강화

- 잔류농약

- 국내 농약관리법에 사용 등록되는 모든 농약(100%)의 기준 설정 추진
- ‘90년대 이전에 설정된 200여종의 농약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 실시

- 동물용의약품

- EU 수준 및 국내 등록된 동물용 의약품 전품목(100%)에 대해 기준 설정(현재 87→160품목)
- 중금속
  -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원재료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Codex 기준과 조화 지속 추진
- 다이옥신 및 PCBs 등 환경호르몬, 곰팡이독소, 기구 및 용기·포장
  - 다이옥신류 등 환경호르몬 등을 EU의 수준까지 기준 설정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다소비 식품 및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관리
  - 유통점유율 및 부적합율이 높은 제품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준·규격 검사만 실시함으로써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미흡
  - 위해정보에 근거한 신속한 안전조치로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요구 증대
  - 비의도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화 및 의도적인 혼입우려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탐색 및 집중관리 강화 필요
  -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있는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강화 필요

## 2. 추진계획

- 국민 다소비 500대 식품 리스크프로파일 작성 및 유해물질 집중 수거·검사 강화
  - 김치·장류 등 국민다소비 500대 품목 선정 및 식품별 리스크프로파일 작성 및 수거·검사 실시
-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신속한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선행조사 실시
    - \* 선행조사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위해물질 검출 여부를 신속 확인하는 수거·검사
    - 수거·검사 결과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 검출 시 신속위해평가를 거쳐 해당 물질에 대한 잠정 안전관리 조치 실시

- 유해물질 위법 첨가 등 제조과정 중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 탐색조사 강화
  -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미지의 유해물질을 검색하기 위한 탐색조사를 강화
- 유해물질 잔류조사체계 구축
  - 안전성 수준 진단, 정책수행 효과 평가 및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산정을 위한 잔류조사체계 구축
- 유해미생물 조사 강화
  - 농산물에 오염가능성이 높은 병원성미생물 조사
  - 수입 및 국내산 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미생물 조사
- 유해물질 목록(Profile) 작성 및 관리
  - 농식품 안전에 영향이 큰 유해물질별 목록(Profile) 작성
  - 유해물질별 특성 검색 등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유해물질별 관심순위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지수 개발('10)
- 어패류의 환경중 유해물질 관리강화
  - 어패류 유해물질 D/B 구축 및 어종별 섭취가이드라인 마련('11)
  - 유해물질의 환경중 노출경로별 상대노출기여도 파악을 토대로 어패류 섭취를 통한 유해물질 노출량 저감대책 수립('11)

##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안전과 선택권 확보를 위해 GMO 표시제와 안전관리 강화 요구
  -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표시제 확대 및 이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 안전성평가자료 서류심사 이외에 직접실험을 통한 검증 요구

## 2. 추진계획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검증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독성 및 알레르기성 검증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제 개선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필요

- 새로운 식품 증가에 따라 식품첨가물 사용이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홍보 등을 통한 올바른 소비자의 인식 제고 필요

□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식품산업 발달 및 국민 식습관 변화를 반영한 용기포장 중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
- 조리 기구나 밀폐용기 등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올바른 사용법 정보 제공

## 2. 추진계획

□ 식품첨가물 안전·안심 확보 기반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용기준 강화
-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 강화
  - 국내·외 사용실태 및 위해정보 및 위해평가에 근거한 지정품목의 취소 조치
-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식품첨가물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Codex, EU 등 국제적수준으로 기준·규격 제·개정

- 선진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속적 지정 확대
-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 중 제외국의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이 상이한 품목을 중심으로 Codex, EU 등의 기준·규격을 고려한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연도별 식품첨가물 기준개정 계획〉

항 목	목표치		
	'09	'10	'1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건수	2	2	2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 건수	10	10	10

□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 확보 기반 강화

- 해외 위해정보 파악,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용기포장 안전기준 강화
  - 현행 기구·용기·포장 기준을 EU 수준으로 확대(~'11년)
-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및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방안 마련('09년)

## 1-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1-4-1 생산지·수출지 안전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수입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다양하고 끊임없는 식품 위해 사고 발생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수입식품의 생산·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 대책 필요

#### 2. 추진계획

-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은 수입 전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신고시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수입자 안전책임제' 도입 추진
  -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제품을 수입 하는 '우수수입업소제' 시행
- 축산물의 수입 전 단계에서 위험평가 기능 강화
  - 수입 전 철저한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증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등의 평가 강화
- 생산국의 위생관리실태 현지점검 강화
  - 중국 청도지역에 민간이 투자하는 공인식품검사기관 설치추진
  - 축산물 수출작업장 위생수준 현지점검 강화
  - 식품등 수입물량이 많고 위생적으로 취약한 생산국 현지실사 지속 추진

## 1. 배경 및 필요성

□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

-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관능검사로 통관된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 가중

<’08년 수입검사 현황 : 건수, 비율>

구분	식품	축산물	수산물
수입건수	254,795	68,093	82,028
정밀검사 건수	58,039(22.8%)	8,225(12.1%)	21,317(26.0%)

□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확대

- 과학적인 분석기법 도입, 위해정보 수집 강화를 통한 위해항목 위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사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 2. 추진계획

□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검사 강화

- 부적합이력 및 위해우려 식품에 대하여 현재 23% 수준인 통관시 정밀 검사비율을 위해항목 위주로 30%까지 확대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초기 현물검사 비율 확대(1%→3%)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 단계별(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철저한 검사, 문제 발생시 반송·폐기
- 수산물은 유해물질 예측 기능 강화, 무작위검사 확대 및 부적합 빈발품목의 특별관리품목 지정 등을 통해 검사강화(정밀검사 수용 능력을 감안 20%~100% 정밀검사)

□ 축산물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역·검사시스템 구축

- 검사 인력·기술·장비 확충 등으로 검사의 효율성 향상
  - 효율적인 장비 도입, 분석기술 확보를 통해 검사기간 단축
  - \* 실험실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 실험실 검사 및 운영능력 검증 매년 실시
-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부적합 예측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검역·검사기법 활용

□ 해외 공급망 주체 안전관리 강화

- 현행 세관에 신고되지 않는 “해외 제조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를 수입신고 항목에 신설하여 해외 공급망 주체에 관한 정보입수 체제 정비
- 공급망 주체별 법규준수도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우범 공급망을 선별, 통관심사·현품검사·사후 기획심사 등 특별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단계 안전관리

- 수입 통관단계 검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수입식품 검사 강화
- 수입단계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 □ 식품 회수를 위한 이력추적제 도입

- 유통 중인 안전 결여 식품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한 이력추적제 필요
  - \* 유통구조 다양성, 업소 영세성 등으로 인한 단계적 이력추적제 도입

## 2. 추진계획

### □ 수입 농·수·축산물 안전성 실태조사 실시

- 관련 기관과 수입농산물 안전성 실태 합동 조사 실시
  - 주요 안전성 우려품목에 대한 잔류농약·중금속 조사
- 수입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 \* 잔류물질검사 : '08년도 138종(중점 73종, 감시 65종)
  - \* 미생물검사 : 모니터링 3종, 탐색조사 8종
- 불량수산물 유통실태 파악을 위하여 원산지단속과 병행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 유통식품 추적관리

-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판매기록 전산 시스템 구축('09)
- 식육수입판매업체 외에 식육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선하증권번호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 추가
  - (현재) 원산지·매입처 등 기록 → (보완) 판매처·선하증권번호 등 추가
- 축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도입

□ 유해물질 검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 유해물질 검출 제품은 부적합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사항 제출까지 수입금지 조치 방안 검토('09)

□ 관세법에 국민보건 저해 우려 물품을 Recall 조치근거 마련

## 1-5. 효율적인 검사 및 감시지도

### 1-5-1 식품위생 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국가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가 및 정부정책의 신뢰도 저하

\* 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 지도·점검 결과 허위성적서 발급 등 21개소에서 위법행위 적발 ('08.12~'09.1월)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 검사능력 미흡, 반복적인 위반 등 부실 검사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관련 법 및 하위규정 등의 신속한 제도개선 필요

○ 검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우수시험검사기관제도 도입 필요

#### 2. 추진계획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도입

○ 검사기관 지정 후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자동 소멸하며 재지정 심사를 통한 부실검사기관 퇴출

□ 부정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벌칙 강화

○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 시 퇴출

○ 허위검사성적서 발급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정취소 처분 확대

○ 부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적용하는 벌칙규정 신설

□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

- “검사수수료와 원가산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근거제출 의무화
- 검사수수료 할인 및 뒷거래 방지를 위하여 자체 할인을 적용을 금지토록 강력한 행정지도 및 특별 지도·감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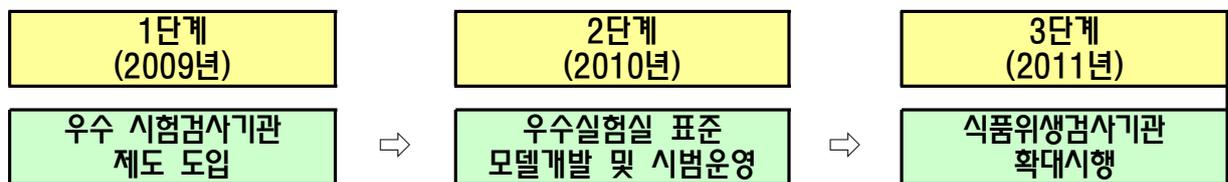
□ 검사능력 ‘현장평가제’ 실시

- 검사기관 지정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능력 평가
- 검사능력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표준시료 개발

□ 우수 시험검사기관제도 운영

- 국제수준의 우수실험실 기준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수시험검사기관 표준모델 개발 및 시행(‘10)
- 검사결과의 신뢰성·추적성 확보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도입

《 우수시험검사기관 추진계획 》



□ 검사기관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 검사기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검사능력 지원 및 검사업무의 적정성 등 관리 (‘09)

□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지도·감독 실시

- 검사기관의 검사실적, 검사수수료 책정현황, 위반이력 및 검사원의 이직 등 “검사기관 관리 프로파일” 구축 (‘09)
- 검사기관 운영관련 비리에 대한 내부자 고발 등 정보 수집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성 검사는 기준·규격이 설정된 성분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인력·예산 및 전년도 조사량 등을 반영하여 연도별 검사계획을 수립
  -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이 요구
    - \* Codex의 샘플링 기준에 의하면 부적합예측치가 1%일 경우 95%신뢰 수준에서 한 건의 위반을 검출하는데 최소한 300점의 시료가 필요

## 2. 추진계획

- 검사대상 및 규모 산정의 과학적인 근거 마련
  - 안전성검사의 대상품목, 검사항목 및 규모를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EU 샘플링 기준 등 국제수준을 고려하여 산정
  - 식품사고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예비적으로 확보
    - 총 검사계획량 대비 2~3%를 예비량으로 편성
- 검사정밀도 향상을 통한 검사 신뢰도 제고
  - 시험검사 검증시스템 도입
- 식품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 항생제잔류 등 위반 축산농장에 대한 출하제한(6개월) 및 출하시 전량 정밀검사 지속 실시
  - 농수산물 안전기준 위반자를 DB화하여 중점관리

## 1-6. 안전한 급식시스템 운영

### 1-6-1 예방 관리 강화 및 신속 검사·원인규명체계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집단 급식과 외식의 생활화로 식중독 발생 급증

○ 10년간('98~'08) 발생건수(119건 → 354건), 환자수(4,577명 → 7,487명) 증가

\* 우리나라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 61명('96) → 214명('04) → 155명('08)

□ 바이러스 식중독으로 인한 겨울철 식중독 증가

○ 발생건 대비 겨울철(12~2월) 발생률 : 11.0%('05) → 14.9%('08)

\* 과거 여름철(6~9월) 세균성 식중독 집중 발생 → 연중 식중독 발생

□ 1회 급식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발생

○ 최근 5년('04~'08)간 전체 환자수의 62.8%가 학교에서 발생

\* 학교, 보육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인원 : 56천개소, 1,180만명 상시 급식

#### 2. 추진계획

□ 『범정부 식중독 종합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전담 대응단』으로 전환

○ 식중독 발생 주요 요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저감화 추진('08 : 20% → '09 : 18% → '11년 : 13%)

- 지하수 사용 학교, 청소년수련 급식시설(1,300여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연 2회) 및 검출 시설 개선 조치

-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체계 운영
  - 비상대응·연락 체계 강화 및 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
  
- 신속 검사·원인 규명 체계 구축
  - 신속한 원인균 추정을 위한 현장검사기법 도입·운영('09)
    - 식중독균 간이신속검사법 활용 및 시험법 개선·보완을 통해 신속한 발생 원인 규명 및 선제적 예방 조치 실시
  - 식중독 조사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원인규명률 제고('09~)
    - 지방식약청, 지자체 식중독 담당 공무원 대상, 식중독 원인조사 기법 등에 관한 전문 교육 실시
  
- 식중독 예방 강화
  - 집단급식소, 학교 등에 위생점검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09~)
  - 전국 단위·특정지역의 동시 다발적 집단 식중독 확산 차단('09~)
    - 식중독균 및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발생 원인과 오염경로 추적 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09~)
    -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양분석을 통한 단계별 관리 방안 마련

## 1-6-2

## 취약 시설 집중 지도 · 점검

### 1. 배경 및 필요성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고발생 시 심각하고 대형화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관리 필요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46,606 개소, 상시급식인원 11,162천명

□ 개학, 하절기 등 시기 및 대상별 중점 예방관리 필요

○ 사전 예방적 조치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 2. 추진계획

○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지도 · 점검

○ 식중독 발생 시기 및 대상에 따른 특별 집중 지도 · 점검

- 청소년수련원(4~5월), 음식점(5~9월), 도시락(4, 7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12월) 등

음식점	학교	청소년수련원	기업체 급식소, 도시락 업소	군납 업소	유원지, 해수욕장, 휴게소 등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기타 (횃집, 고시원, 생고기집 등)
5~9월	2월, 6월, 8월	4~5월	4· 7월	5· 11월	6~8월	12월	수시

\* 음식점 5월 ~ 9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학교 3월 · 9월 개학시기 집중 발생

## 1. 배경 및 필요성

- 급식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생·안전성 미흡
  - 기존 급식시설의 10년이상 경과에 따른 노후화 및 현대적 조리기구 부족 등으로 위생·안전사고의 위험성 내재
- 학교내 급식관리 철저만으로는 식중독 차단에 한계
  -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식중독 사고에 대한 오염경로 등 명확한 원인규명이 미흡한 실정

## 2. 추진계획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HACCP 원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급식환경 개선사업 추진
  - '09~'11년(3년간) 2,100개교 급식시설 현대화에 4,200억원 지원
- 학교급식시설 위생·안전점검 강화
  - 학교내 급식시설은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연 2회 83개 항목 불시 전수점검 실시 → 5개 등급별로 D/B화 관리하여 위생수준 향상
  - 식재료 유통체계 안전관리 및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 철저
  -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명제' 운영
    - 급식시설 청소계획 수립 및 위생관리 담당자 지정으로 책임성 제고

##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마련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규정(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영세 소규모 식재료 유통업체의 난립
  -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08.1월)되었으나 영세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 등으로 저급 식재료 유통 우려

## 2. 추진계획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및 우수하고 안전한 업체 선정
  - 안전과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식재료 구매방법 적용
    -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조달(G2B 이용), 경쟁입찰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지양, 생산자단체 직거래 확대 등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 식재료 원산지과 품질등급 심의 의무화 및 대면검수 강화
  - 자치단체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
    - ('08) 6,768개교 1,233억원 → ('11) 8,000개교 2,000억원 지원
  - 이력추적이 가능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불안 해소
    - HACCP,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등 품질인증 식재료 사용 권장

## 1. 배경 및 필요성

### □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지도 근거 규정

- 학교장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관리 및 영양상담 등 식생활 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

\*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제13조(식생활 지도), 제14조(영양상담)

### □ 식생활 문화의 변화, 비만학생 증가

-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아동의 아침결식, 편식,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섭취 등으로 비만 및 소아성인병이 증가하는 경향

## 2. 추진계획

###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강화

-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영양관리
- 학교급식 영양기준 준수 및 튀김류·가공식품·화학조미료 사용 억제

### □ 올바른 식사 선택 능력 배양

- 학교급식 영양량 표시제 시행 및 전통식문화 계승교육 실시
- 특정식품 알레르기 반응 학생에 대한 대체식품 제공방안 강구
- '식사에절실' 운영 및 특별활동 등 식생활 체험교육 강화

### □ 영양상담 등 식생활 지도 내실화

- 학교별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등에 대한 식생활지도 강화
- '잔반통 없는 날' 운영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도

##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 원칙으로 운영

- '06. 7월 직영급식 원칙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 기존의 위탁급식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sup>1)</sup>를 제외하고 유예기간 3년('10.1.19)이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
- '06년말 위탁급식 1,501개교 중 '07~'08년에 409개교는 직영전환
  - 나머지 1,092개교는 '09년 현재 위탁급식으로 운영

□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급식운영 미흡

-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위한 수요자 의견수렴 부족
- 급식불만 해소를 위한 시스템 부재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내재

## 2. 추진계획

□ 직영전환 가능학교 지원

- '10년(유예기간) 이후에도 직영전환을 희망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는 급식시설 개선비 등 적극 지원

□ 수요자 참여 보장 및 급식운영 내실화

-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학교별 '급식소위' 운영 의무화
- 학교 홈페이지에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의 '급식게시판' 운영

1)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 1-7. 위기대응기반 구축

### 1-7-1 위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으로 효과적인 위해 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유해물질 검출 및 긴급 대응 미흡으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불만 고조 및 관련 산업계 기업 이미지 훼손
- \* 축산물, 수산물,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위기대응매뉴얼이 작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안전 위기대응매뉴얼은 작성 중에 있음

#### 2. 추진계획

-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
  - 위기 상황시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위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09.4)
  -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모의훈련 실시(년 1회)
- 위해 정보 입수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 및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 위해정보에 따라 먼저 수입·유통·판매 잠정 금지 조치를 취한 후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실시
  - 관련기관에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통보

## 1. 배경 및 필요성

□ 증가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평가 및 전문적인 회수관리 시스템 부재로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 위해식품 회수율이 '07년 10%로 선진국(미국)의 36%에 비해 저조

□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화된 회수관리 전문시스템 구축 및 운영필요성 증대

## 2. 추진계획

□ 위해식품 신속회수를 위한 회수전담반 설치·운영

○ 식약청에 「위해식품 회수전담반」 구성·운영

- 위해식품의 유통·판매경로에 대한 추적조사 및 회수 진행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담반을 식약청에 설치·운영
- 「위해식품 회수전담반」에서 모든 회수대상 식품의 평가, 추적조사,  
회수현장 확인·검증 등 총괄관리로 회수율 제고(현재 10%수준의  
회수율 → '11년 30%)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 시 객관적이고 신속한 안전조치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식품경보제도 필요
- 신속한 경보발령 및 소비자행동요령 제공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확보 방안 필요

## 2. 추진계획

- 위해 발생정보 신속전달 경보제도 시행
  - TV 자막,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긴급회수 품목에 대하여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는 식품위해발생 전달체계 구축·시행('09)
    -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및 소비자 긴급대응 요령을 신속 전파하여 회수율 제고 및 피해확산 방지
  - 온라인을 통한 식품위해정보 상시 제공체계 마련 시행
    - 식품위해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식품안전창'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
      - \* 신속하게 상시로 위해정보 및 소비자행동요령 제공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 식품 및 사료의 위험 및 위해 사고발생시 이를 이해관계자 및 대 국민에게 긴급 전파하는 통합 긴급경보발령 시스템 구축('11)
  - 위해 발생정도에 따라 심각(적색), 경계(황색), 주의(청색), 안전(백색) 4단계로 구분 발령 및 소비자 행동요령 제공(연중)
  - 위기사항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 수입자 대상으로 방송, 문자서비스, E-mail등을 통한 전파

## 1-8. 위해사범 단속 및 영업자 책임 강화

### 1-8-1 식품위해 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고의적인 중대 식품위해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최근 광우병 및 AI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추진계획

-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활용한 체계적 단속
  - 식약청, 지자체,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 실시
  - 사전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범위반 가능성 있는 곳 집중 점검·단속
- 실시간(real time) 수사지휘 체제 확립
  - 식약청, 지자체, 농관원, 수검원 등과 24시간 Hot-Line 구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 전산시스템 및 관세청 통관정보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최종 소비단계까지 추적
  - 수사 초동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수사지휘
-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강화 및 형량 강화
  - 식약청 내 「위해사범중앙수사단(특별수사기획관 : 파견검사)」 설치·운영 ('09.1)을 통해 고의·상습적 식품 위해사범 근절 추진

-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의 사후관리 등 강화('09.8)
  - 형량 하한제 강화(1년→3년), 위해식품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제(소매가에 상 당하는 금액) 도입(식품위생법시행령, '09.8)
  - 식품등 수입신고시 허위신고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간 2회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진 아웃제,'09)
- 적극적 수사·공소유지로 엄중한 처벌 유도
  - 식품사범에 대하여는 최대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걸 맞는 엄중한 처벌 유도
- 경제적 이익 박탈 등 사후관리 철저
  -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벌금형 병과 및 양 벌규정 등 법에 규정된 형벌을 적절히 적용
- 식품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상습적 안전기준 위반자 공표, 도매시장 출하제한 및 정책자금 지원 제한 추진
  - 항생제잔류 등 위반 축산농장에 대한 출하제한(6개월) 및 출하시 전량 정밀검사 지속 실시
  - 농수산물 안전기준 위반자를 DB화하여 중점관리
  - 소비자가 가공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육안, 서류확인 등) 단속강화
- 불법·유사 건강기능식품등 단속강화
  - 해외 판매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건강기 능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09~11)
  -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차단('09~11)

1-8-2

원산지 표시 및 가짜상품 단속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수입식품에 대하여 전국 47개 세관별 원산지표시 및 가짜상품 집중단속 실시 필요

2.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수입물품의 성분, 함량, 품질 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행위 단속 강화

< 현행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및 단속범위 >

수입 단계	유통 · 판매 단계			수출 단계
	단속기관	단속대상	근거법(처벌)	
관세청	관세청	시중유통 수입물품	○ 대외무역법 □시정명령, 과징금(3천)	관세청
수입물품 검사 ○ 대외무역법, 관세법 □시정명령, 과징금(3천)	시·도	시중유통 수입물품 (국산 농산물)	○ 대외무역법 □시정명령, 과징금(3천, 과태료(1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정명령, 과태료(1천)	수출물품 검사 ○ 대외무역법, 관세법 □ 시정명령, 과징금(3천) □ 유치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산물 품질검사원	수입/국산 농산물 (*음식점 단속)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정명령, 과태료(1천), 공표	
	식약청	음식점 단속	○ 식품위생법 □시정명령, 영업정지·과태료(1천)	
	공정거래위	허위 표시 · 광고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 시정명령·공표·과징금	
	무역위원회	시중유통 수입물품	○ 불공정무역 및 산업피해 조사법 □ 지경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건의	

## 1. 배경 및 필요성

### □ 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부족

- 수입 OEM 식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외국에서 주문자위탁방식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국내 생산 제품보다 제조·가공과정에 대한 관리가 미흡

### □ 식품제조·가공의 시설기준 개선 필요

- 식품제조·가공 시설의 기준은 '90년대 최초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개정 검토 필요

## 2. 추진계획

### □ 수입 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관리강화

- 수입 OEM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품질검사 및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 (09)

### □ 식품제조·가공의 시설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식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향상

\* EU,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제조업소는 GMP(우수제조기준), GHP(우수 위생기준) 준수

- 외국의 사례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기준을 마련(10)

\* 시설 없이 동 제조시설에 위탁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병행

□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강화('09)

- 대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대형 백화점에 소속된 식품매장 등의 안전성을 대기업, 대형백화점에서 책임지도록 의무 강화

□ 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제품의 안전성을 보증 할 수 있도록 품질규격 위주 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검사\*로 개선('09)

\* 예) 영유아식: 단백질, 지방, 감미료 등 → 중금속, 대장균군, 사카자키균 등

□ 식품이물신고 접수에 대한 영업자의 보고의무화('09)

- 금속, 유리등 인체에 위해한 이물에 한하여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 되었을 경우 식약청 및 지자체에 보고토록 의무화
- 식약청 및 업계의 공동 원인조사를 통한 이물 방지대책 마련

##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 2-1. 식품 위해성평가의 과학성과 독립성 강화

#### 2-1-1 과학적 위해성평가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안전관리 과학화를 위한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수행이 요구
  - 수입국의 다변화, 국민식생활 형태의 변화, 분석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소의 증대 및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
  - 위해성평가 결과의 품질 제고 및 대내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 생산·수집·DB화 등이 필요

##### 2. 추진계획

- 과학적 위해성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수행절차 확립
  - 기존 평가업무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한 위해성평가 업무 지침 개정('09)
  - 위해성평가 관련 자료의 일관성 있는 관리
    - 유해물질 모니터링 자료의 D/B화 및 관리('09년~'11년)
    -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09년~'11년)
    - 통계적인 대표성을 갖는 한국인 식품섭취량 자료연동('09년~'11년)
  - 농약·항생제·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위해성평가 강화('09~'11)
    - 농약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위해성평가 규정 명문화
    - 식품용 용기포장 중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기준 미설정 신종유해물질의 위해성평가 수행
- 부처별 위해성평가 관련 자료 공유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연합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위해성평가 기관과 위해 관리 기관을 분리할 것을 권고

○ 선진국은 자국에 적합한 형태로 위해관리와 위해성평가를 시행

미국 - 위해성평가·위해관리 : 농무부, 식품의약품청, 환경청

영국 - 위해성평가·위해관리: 식품기준청, 환경농업식품부(관리)

독일 - 위해성평가·위해관리 :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프랑스 - 위해성평가 : 식품안전위생청, 위해관리 : 농수산부·보건부·소비경제부

덴마크 - 위해성평가 : 식품연구소·수의연구소, 위해관리 : 수의식품청

일본 - 위해성평가 : 식품안전위원회, 위해관리 : 농수산성, 후생노동성

□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해관리·위해성평가 기관 형태에 대해 검토할 필요 제기

○ 위해관리·위해성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식품안전 신뢰도 향상 도모

## 2. 추진계획

□ 과학적 위해성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위해성평가·위해관리 시스템 연구

○ 위해성평가·위해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 과학적인 위해성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 관한 검토

○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기관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

## 2-2. 식품안전 R&D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2-2-1 식품 안전성 연구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평가 및 기준·규격 설정 연구 미흡
  - 식품 중 잠재적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 확보가 요구(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 강화)
  - 식품 등 유해물질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기반 확대 필요
  - 식품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연구 및 보급

#### 2. 추진계획

- 식품안전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강화
  - 식품등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 제·개정 및 시험법
  - 국내 항생제내성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국제지침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분석 연구
  -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연구
- 축산식품 안전관리기능 지원 강화
  - 검사·분석,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및 기준규격개선 등 정책수립·시행을 위한 연구분야 투자확대

- 인수공통전염성 병원체, 화학물질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분석,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강화

- 인수공통전염병 등 유해 미생물 관리기능 지원 강화

- AI, 브루셀라 등 우선 대응이 필요한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식중독 원인체에 대한 기술개발연구를 집중하여 종합적인 국가적 방제체계를 구축

□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내성기전연구 및 대체치료제 개발

- 농축수산물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항생제 내성 안전 관리사업 추진

-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동물에서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추진

□ 수산물 위해요소 제어기술 개발('09~'11)

- 어패류독소 동물시험 대체 분석법 개발

- 수산용 항생제 표준분석법 개발

- 수산물 중 미생물 조사방안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HACCP 확대 실시 및 위해분석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HACCP 지도관 양성 확대 필요
  - 중소기업체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HACCP 적용에 어려움 가중
    - \*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HACCP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 직무별·수준별 맞춤형 '위해분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위해분석 수행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

## 2. 추진계획

- HACCP 지도관·검사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 신규 HACCP 지도관 양성 교육 확대
  - 기 지명된 HACCP 지도관의 지정평가업무 눈높이 일치 등을 위한 이론 및 현장평가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연5회, '09~)
  - 축산물 HACCP 적용작업장 검사담당자 미생물 실습 교육
- 민간인 대상 HACCP 전문교육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 강화
  - 식품 전공 대학생 HACCP 아카데미 등 운영을 통해 HACCP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09~)
- 위해분석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교류 실무자 과정 개발·운영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
  - 시험검사 관련 지도·조언할 수 있는 검사관리책임자 부재
  - 검사원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
- 고품질 안전 농식품 수요 증가로 안전성검사 물량과 대상 유해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체계적인 위생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은 미흡

## 2. 추진계획

-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및 검사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검사기관 검사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지정 및 실험실습 중심의 『시험검사 전문교육 과정』 운영('11)
- 축산물·수산물 위생관리·정밀검사 교육 강화
  -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기술 고도화 지원 및 축산물가공품 검사반 등 농업연수원 전문교육 수행
  -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 정밀검사 전문인력 육성
- 농산물 정밀분석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추진
-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 3-1.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

<b>3-1-1</b>	<b>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b>
--------------	---------------------------

### 1. 배경 및 필요성

- 성공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식품위해에 대한 활발한 정보 및 의견교환이 중요
  -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
- 잦은 식품안전 사고로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소비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지역단위 안전관리 협의체를 마련하여 지역단위로 의사소통 활성화
  - 농업인·소비자·기업·언론인·학계·정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안전 사고발생시 상호협력 공간으로 역할 제고

### 2. 추진계획

-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활성화
  - 소비자, 학계, 업계, 기관 등과 평시 및 위기상황 커뮤니케이션체계 구축

- 식품안전 현장에 국민이 참관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참관인」 제도 확대
-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모니터링 망』 구축 · 운영
  -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운영('09)을 통한 식품안전 궁금사항 해소
  - 학부모, 소비자 단체가 참여 「소비자 감시단」 확대 운영
    - \* 6,500명('08)→8,000명('09)→10,500명('10년)→13,000명('11년)
  - 식품안전 문제 발굴 및 이슈화 추진 등 「소비자탐사대」 운영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운영('09)
  - 식품제조시설의 안전을 소비자 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
- 식품 등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현을 위한 식품안전열린포럼 정기 개최
  - 지역별 특성화에 맞는 지역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도출하여 참여형 열린 행정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10~'11)
-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단위 안전관리 협의체로 확대 · 발전
  - 농산물 품질관리 중심에서 축산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포괄하는 지역단위 의사소통 공간으로 확대
- 농식품안전상담센터 설치 · 운영
  - 농관원 수괴원 등 소속 기관의 농수산물 안전부정 유통 상담 및 신고 기능 통합 추진
- 식품안전 행정 과정에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내실화
  - 식품위생심의위원회·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축산물위생심의회·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업계 대표 참여 확대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식품안전 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함께 안전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국민 식품안심 정책 병행 필요
  - 식품안전성 평가나 안전성 검사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
- 관계부처를 연결하는 통합정보시스템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미흡
  - 소비자 정보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검사 및 리콜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 구축 필요
-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식품 선택요령,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

## 2. 추진계획

- 소비자 구매 전 안전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편의점, 마트등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시점에서 유통·판매 금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체계(POS시스템) 구축
- 안전성 검사정보 공개 확대
  - 안전성검사 또는 잔류조사 결과 위해식품 발견시 신속 공표
    - 소비자가 위해식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소비자 행동요령과 함께 공표

- 식품안전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기준규격 위반 식품생산자의 상세정보 공표 추진
- 소비자 정보서비스 창구 일원화
  - 검사정보 및 리콜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 구축
- 소비자 및 식품취급자 등 교육 강화
  - 청소년·주부 등 소비자와 언론인,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교류 강화
  - 소비자단체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09년 ~ '11년)
  - On/Off-line를 통한 정보 교류 강화('09년 ~ '11년)
-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09~11)
  -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홍보매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제고('09)
  - 체계적인 소비자 맞춤형 교육·홍보 지속적 실시
-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및 워크숍 개최 확대

## 1. 배경 및 필요성

- 가정에서의 식중독 발생 증가 및 이에 따른 예방교육·홍보 필요
  - 가정 식중독 발생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필요
    - 주부 대상 효율적 위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

### < 연도별 가정의 식중독 발생현황 >

연도별	'04	'05	'06	'07	'08
건수(건)	7	9	15	30	24
전체대비(%)	(4.2)	(8.2)	(5.8)	(5.9)	(6.8)
환자수 (명)	44	111	119	151	176
전체대비(%)	(0.4)	(1.9)	(1.1)	(1.6)	(2.4)

- 비만예방을 위한 식탁 구성 정보제공 필요
  - 주부들이 가정에서의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영양 공급을 위한 식탁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요구

## 2. 추진계획

- 가정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상에 가정용 식중독 예방 홍보프로그램 운영('09)
- 가정 내 식중독예방 교육 강화
  - 올바른 손씻기 교육(주부 및 학생 대상) 강화('09~)
  - 반상회 등을 통한 가정내 식중독 예방 요령 배포
- 내가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인터넷상에서 내가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09)

## 3-2. 식품 표시기준 합리화

### 3-2-1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개선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정보 요구 충족 필요

- 수입 OEM 제품은 대부분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

#### 2. 추진계획

□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식품표시 개선

-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원산지 등 전면표시제 도입
- 특정원료 함유 식품의 원료함량 표시방법 개선
  - \* (예) 사과주스(사과 함유량 20%), 바나나향 우유(인공향 첨가) 등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제도 강화
-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표시기준 개선 방안 검토

□ 「그린푸드(Green Food)제」 도입 추진 검토

- 천연첨가물 등을 사용하는 제품을 “그린푸드”로 지정

## 1. 배경 및 필요성

□ 농산물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 농산물원산지표시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531품목

\* 음식점원산지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원산지표시 위반의 지능화·대형화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과학적 원산지 판별 기법의 개발 및 체계적 수입정보 관리 강화

## 2. 추진계획

□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쉽고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고 표시대상을 확대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08) 531개 → ('09) 550개

○ 원산지표시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개선 추진

○ 유통 축산물에 도축장명을 표시하는 “도축장실명제” 도입

□ 원산지 단속기능 강화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

○ 음식점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통해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 점검 실시('09)

○ 원산지표시 자율관리업체를 '13년까지 1,800개소 이상 확대

□ 과학적 원산지 판별 기반 구축

○ 주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고 DNA 등 원산지 판별 DB를 구축·활용

### 3-3. 적절한 영양성분 섭취 관리 추진

#### 3-3-1 | 위해가능 영양성분 중점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의 영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
  -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잉 섭취시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영양 성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확산
-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량의 증가
  - \*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 ('98) 4,542mg → ('01) 4,903mg → ('05) 5,289mg
  - \* 청소년 당류 섭취량: 61g으로서 WHO 권고량의 2.6배 수준

##### 2. 추진계획

- 식품 중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저감화
  -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 등의 트랜스지방 중점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09~'11)
    - \* 가공식품 중 트랜스지방 0g(1회 제공기준량당) 달성율 '12년 100%
  -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체의 저감화 유도
    - 저-포화지방 함유 가공유지 기술개발 및 산업체 기술지원('09~'10)
-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 저감화
  - 외식업체 영양성분표시 시범실시 확대 및 의무화 추진
  -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 저감화를 위한 현장맞춤형 교육·홍보('09~'11)
-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구축 및 운영 ('09~'11)
  - 외식 가공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DB(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주변의 어린이 먹을거리 관리 취약
  - 저가의 질 낮은 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이 판매되는 등 학교 주변 위생·안전 수준 취약
- 편식과 패스트푸드 선호로 성장기 영양불균형 우려
  - 어린이들은 채소·생선 등의 자연식품보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선호
    - \* 유아 편식식품은 채소 56.6%, 생선 21.8%, 콩 17.6% 등으로 조사(식품영양학회지,오유진 외, '06)
    - \* 청소년의 44%가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섭취(한국소비자보호원, '06)

## 2. 추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09~)
  - 소비자 감시단원을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학교주변 위생계도 및 부정·불량식품 퇴출 유도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실태 조사를 토대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 기획단속 실시 및 수거·검사 강화
  - 식품덮개시설 및 판매대 등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수준 제고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학교매점 등 판매 금지 추진('09~)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학교 매점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지도·점검
  - 제품개선을 통한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감소 유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도입·시행('09년~)

○ 안전·영양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인증하여 로고 표시·광고 등 인센티브 부여

○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안전·영양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정마크 표시·광고 등 인센티브 부여

\*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우수제품 유통기반 구축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표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를 위한 정책 수행과 환경개선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고시('09)

○ 지자체의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영양관련 정책 추진실적 평가

## 1. 배경 및 필요성

### □ 비만 유병률 빠르게 증가

- 매년 약 40만 명의 성인비만환자(20세 이상) 증가

\* 성인 비만 유병률 : '98년 26.3% → '05년 31.5%

- 어린이(2~18세) 비만 8년 사이 약 2배 증가

\* 어린이(2~18세) 비만 유병률 : '97년 5.8% → '05년 9.7%

### □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사회경제적 비용부담 증가

- 한국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조8천억원 추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계자료(2008)

## 2. 추진계획

### □ 올바른 영양과 식생활 인식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09~'11)

- 균형 있는 영양섭취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09.5)

### □ 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강화 및 홍보 강화('09~'11)

-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메뉴 등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인터넷을 통한 바른 식생활 홍보 및 교육 자료 제공

### □ 수요자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및 정보교류 활성화('09~'11)

- 초등학교 재량수업 등을 활용한 영양교육 시범실시 확대

- 영양사 등 전문인력 대상의 정보교류 활성화

# 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 4-1. Codex 등 국제적인 협력강화

### 4-1-1 Codex 협력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Codex의 중요성 및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필요성 증대

- WTO 이후 Codex 규격이 식품에 관한 범세계적 공통규격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성 부각

〈Codex 규격 및 지침 설정 현황〉

구분	규격 (Standard)	실행규범 (Code of Practice)	지침 (Guideline)	회원국	분과위원회(30개)			
					일반국제 분과위원회	식품별 분과위원회	지역조정 위원회	정부간 특별위원회
개수	203	47	59	178개 회원국/1개 회원기구(EC)	10	11	6	3

- 우리나라도 기준·규격 제·개정시 Codex 규격 최대한 준용
- 우리 고유 식품의 국제 규격화 사업 추진
  - 김치('01) 및 인삼·고추장·된장 규격화 추진 중('09년 예정)
  - 건고추 농약기준 설정 원칙 개정(생고추기준의 10배→7배, '08) 등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의 식품안전 기대 수준에 맞는 역할을 위한 노력 경주

-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및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한국 유치 등
  - 제14차,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04, '06),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개최 주관('07~'10, 4년간)

-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 「비타민·무기질 영양소기준치 개정」  
작업반 의장국('08~)

## 2. 추진계획

### □ Codex 국제회의 참여 활성화 및 국제 규격화 활동 확대

-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운영
  - 제3차('09), 제4차('10)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개최 주관
  - 국제적 합의를 통한 '항생제내성 위해분석지침' 개발
- Codex 신선 과일·채소류 분과위 신규 참여로 적극 대응('09)
- Codex 영양소기준치(NRVs)설정을 위한 작업반 운영('09~)
- 우리 식품의 식품 분류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화 추진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09~)
- 오염물질(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푸모니신 등) 저감화 지침 설정  
작업반 참여('09~)
- 축산식품의 국제기준 등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10~)

### □ Codex 규격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

- Codex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한 규격 및 의제 관리 강화('09~)
- Codex 지침 모음서 등 규격 및 지침 번역자료 발간·배포('09)
- 축산식품관련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활용('09)

## 1. 배경 및 필요성

### □ 식품안전 협력강화를 통한 수입식품의 원천적 안전 확보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국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 중국('03.10 체결, '07.10. 개정), 칠레('06.6.)

- 수출 가공공장 등록제 및 현지 위생점검 등을 포함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약정체결

\* 수산물 약정체결국 (4개국, 5개 약정) : 중국, 인니, 태국, 베트남

### □ 위생약정 체결 확대 추진

- 수입식품이 많은 국가,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와 식품안전 위생약정 체결 확대 추진 필요
- 식품안전 관련 정보교환, 수입식품에서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등 수입식품 안전강화를 위해 약정체결 추진

## 2. 추진계획

### □ 위생약정 체결 확대

- 2011년도까지 주요 수출국 2개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 추진

-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식품관련 국제행사를 통한 협력 약정 체결 사전 협의

\* 태국, 베트남과 협정체결('09)

### □ 수산물 주요 수출국과 위생약정 체결 확대

- 러시아, 뉴질랜드 등으로 수입위생약정 체결 확대

- 수출 가공공장 등록제 및 현지 위생점검 등을 포함하여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 4-2. 식품안전 정보관리 체계 강화

### 4-2-1

### 식품안전정보수집 역량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식품안전 정보를 인터넷, 해외 주재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활용
  - 멜라민, 다이옥신 및 특정 항생물질 등 현지 식품안전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수집 필요
  - 식품 수입량이 많은 국가, 위생 취약 국가 등 정보수집 대상 국가의 확대 필요
- 수집 정보의 분석·평가 기능이 취약하고 기관별 수집·분산에 따른 중복과 효율성 저하 초래

#### 2. 추진계획

- 국내·외 안전정보 수집 강화
  - 식품 수출입이 많은 국가의 위해정보 수집 체계 확대, 정보 수집·분석 강화
  - 국내·외 농식품안전 정보 수집 강화
    - 해외 주재관, 식품관련 종사자 등을 통한 해외정보수집 확대
    - \* 민간 해외정보관리 담당자 : ('08) 7개국, 25명 → ('09) 12, 50 → ('11) 17, 100
- 식품안전정보관리 네트워크·구축·운영
  - 관련부처, 유관기관, 업계,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내 위해정보 네트워크 구축
  - 위해정보 분석·평가 및 대응 수준별 공유체계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구축 전문인력 부족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위해정보 공동 활용,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필요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및 식품안전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 체계 미흡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
    -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소통 채널 구축

## 2. 추진계획

-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09)·운영
  - 관련부처 등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계기별·이슈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 식품나라([www.foodnara.go.kr](http://www.foodnara.go.kr)),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www.foodsafety.go.kr](http://www.foodsafety.go.kr))과 연계
  -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회수지원을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4-3. 부처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 4-3-1 식품관련 규정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을 기본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등 28개 관련 법령을 농식품부, 복지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관장
  - 유사, 동일한 업무를 2개 이상의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통일된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 필요
- 안전기준·규제 제·개정 시 부처간 협력 강화 필요
  - 각종 조사자료, 관련 분야의 의견 교환 등 소통 체계 구축 필요
  - 기준설정 계획 단계부터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

#### 2. 추진계획

- 식품안전관련 법령정비 추진
  -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정 추진
  - 식품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검토
- 식품안전관련 각종 심의·협의 기구에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참여 확대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정책담당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수렴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기준 및 각종 법령 위반 정보의 공유 필요
  -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 조사(식약청) 결과 위반자 및 물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추적조사 체계 구비 필요
    - 반복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대상으로 관리

## 2. 추진계획

- 국내외 식품위해정보를 관계 부처 간 공유체계 확립
  - 해외 주재관, 식품관련 종사자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
  - 식품안전관련 부처별 운영 웹사이트의 연계 강화
    - 위해식품명, 생산자, 생산량, 유통경로 등의 정보 공유
-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자료 공유
  - 식품안전에 영향이 큰 유해물질별 목록을 작성하여 부처 간 공유
    - 생물학(세균, 곰팡이 등) 및 화학적(잔류농약, 중금속, 자연독소 등) 위해요소 등에 대한 프로파일 공유 확대
    - 유해물질별 특성 검색 등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정보 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간담회, 포럼, 심포지움 등을 통한 정보교류 확대
  - 안전성연구회, 축산식품 위험분석연구회 등 학습동아리를 관계부처 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여 상호교류 확대
- 지도·점검 결과의 공유체계 마련
  - 기존의 식품나라와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의 연계('09)를 통해 생산 및 유통 각 단계별 위반자 및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 채널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수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08.12.14)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 2. 추진계획

- 식품안전 관련 주요제도 개선
  -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조정
    - 부처별 식품안전 업무의 협력 강화·조정 기능 수행
    - \* 기획·제도, 위해정보교환·긴급대응, 화학물질, 미생물, 신식품 전문위원회 등 5개 분야로 구성
-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식품안전제도의 신뢰 제고
  - 언론기관·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식품현장을 방문하고,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언론인·시민단체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 제고 추진
- 식품안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

## 4-4. 중앙-지방정부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 4-4-1

###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연계를 통한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추진
  - 지자체(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일상적인 점검), 식약청(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기획 점검)
    - \* 필요시 식약청 및 지자체 참여 합동단속 실시('01~계속)
- 지자체의 위생관리 기반 및 인프라 취약
  - 자치제(95년) 실시이후 규제업무인 위생관리 소홀 경향 심화
    - 지자체의 위생과 축소(과단위→계단위), 업무과중, 인사 불이익 및 감사의 집중으로 위생관련부서 업무 기피
  - 관리업소(100만여개) 대비 관리인원(2,800여명) 절대 부족
    - 1인당 350여개 업소 관리로 대부분 행정처분업소 등 부분적인 업소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

#### 2. 추진계획

- 식약청의 위생 감시 인력 101명 지방자치단체(시·도) 이체
  - 중앙정부의 전문 인력 자치단체 이체로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 안전관리업무 수행
  -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안전관리업무인 인·허가, 지도·단속, 시험분석 등의 업무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시·도 단위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 추진
  - 민간단체의 식품안전, 감시활동과 연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체계 강화
  
- 지자체의 위생관리 효율성 제고 및 상시관리 체계 운영
  -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등을 기본바탕으로 평가결과 문제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관리업소로 등급구분하고 중점관리업소는 집중 관리
  -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기획단속 강화
  - 반복·상습적 위반업소는 이력관리를 통해 상시 관리
  - 지자체 내의 효율적 역할분담 추진
    - 시·도는 특별관리업소 및 고의·상습적 업소를 관리하고, 시·군·구는 위생관리등급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 위생연구소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
  - 식품안전관리지침, 식육 중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지침 등에 따라 안전성 검사 실시
-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인증 농산물 확대 등에 따라 산지에서의 안전성 검사 수요 급증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기반 확충 필요

## 2.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능력 제고
  - 새로운 물질의 분석법에 대한 교육 및 필요 기·자재 지원
  - 공인검사기관 지정, 정도관리 등을 통한 검사신뢰도 제고
- 검사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마련('09.12)
  -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검사정보의 실시간 공유
  - 지자체의 검사결과를 신속히 보고받아 관련기관에 공유하게 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일일상황시스템」 구축·운영

## IV. 향후 추진방안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 보고
  -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에 따라 '09년도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6월말까지 국무총리에 제출
  - \* 지방자치단체는 '10년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2월까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이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 결과는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그 결과 차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09년				'10년					'11년				'12년				
5월	6월	...	11월	12월	1월	2월	3월	...	11월	12월	1월	2월	3월	...	1월	2월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제출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제출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제출			

**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세부과제	추진내용	관련부처
<b>1-1.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b>		
1-1-1. 농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류농약, 중금속 및 유해미생물 등을 중점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HACCP 확대</li> <li>○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수산해역 위생관리 확대</li> </ul>	농식품부
1-1-2.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 판매관리 강화 및 안전사용기준 개선</li> <li>○ 동물용 의약품 품질 및 유통관리 강화</li> </ul>	농식품부
1-1-3. 사료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종류 감축, 사료 모니터링 강화</li> <li>○ '11년까지 배합사료공장 HACCP 추진</li> </ul>	농식품부
1-1-4. 축산물 도축·유통단계 위생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한 도축장 구조조정과 연계, 검사관 인력 확충</li> <li>○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li> <li>○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시행</li> <li>○ 도축장 시설 개선 추진</li> </ul>	농식품부
1-1-5. 친환경식품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li> <li>○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및 실천농가 경영 안정 지원</li> <li>○ 친환경 인증·유기가공식품인증 제도개선</li> </ul>	농식품부
1-1-6.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li> <li>○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관리강화</li> <li>○ 먹는샘물, 정수기, 약수터 관리 강화</li> </ul>	환경부

세부과제	추진내용	관련부처
1-1-7.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CCP 적용업소 지정 대폭 확대</li> <li>- '11년까지 HACCP 인증업체 3,000개소 확대</li> <li>- '11년까지 축산물 생산·유통량 75% 수준</li> <li>○ HACCP 적용업체 지원 강화</li> <li>○ HACCP 적용업체의 사후관리</li> </ul>	농식품부 식약청
1-1-8. 안전한 기능성식품 생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확대</li> <li>○ 건강기능 소재에 대한 기술컨설팅</li> <li>○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홍보 및 부작용 신고 네트워크 구축</li> </ul>	식약청
<b>1-2. 식품의 유통·판매 안전성 증대</b>		
1-2-1. 이력추적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이력추전관리·이력정보서비스 확대</li> <li>○ 기업의 이력추적도입 지원 및 확산 추진</li> </ul>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1-2-2. 유통식품 안전관리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유통 식품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적 검사망 구축</li> <li>○ 유통 안전관리 취약요인 관리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1-2-3. 식품보관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물류창고 및 운반차량의 온도 관리 방안 마련</li> <li>○ 식품물류창고 등의 보관 기준 마련</li> </ul>	식약청
<b>1-3. 식품 위해관리 강화</b>		
1-3-1. 식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1-3-2. 유해물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다소비 500대 식품 리스크 프로파일 작성 및 집중수거 검사</li> <li>○ 위해우려물질의 신속한 안전관리 강화</li> <li>○ 유해물질 목록(Profile) 작성 및 관리</li> <li>○ 어패류의 환경중 유해물질 관리 강화</li> </ul>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청
1-3-3.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li> <li>○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li> </ul>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1-3-4. 첨가물·용기·포장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첨가물 안전·안심 확보 및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li> <li>○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확보 기반 강화</li> </ul>	식약청

세부과제	추진내용	관련부처
<b>1-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b>		
1-4-1. 생산지·수출지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li> <li>○ 축산물의 수입 전 단계에서 위험평가 기능강화</li> <li>○ 생산국의 위생관리실태 현장점검 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1-4-2. 통관단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검사 강화</li> <li>○ 축산물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역·검사시스템 구축</li> <li>○ 해외 공급망 주체 안전관리 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관세청
1-4-3. 국내 유통단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농·수·축산물 안전성 실태조사</li> <li>○ 유통식품 추적관리</li> <li>○ 유해물질 검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구축</li> <li>○ 관세법에 국민보건 저해 우려 물품 Recall 조치 마련</li> </ul>	농식품부 식약청 관세청
<b>1-5. 효율적인 검사 및 감시지도</b>		
1-5-1.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도입</li> <li>○ 부정행위 지정취소 및 벌칙 강화</li> <li>○ 검사기관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운영</li> <li>○ 검사능력 ‘현장평가제’ 실시</li> <li>○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li> </ul>	농식품부 식약청
1-5-2.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대상 및 규모산정의 과학적인 근거 마련</li> <li>○ 검사정밀도 향상을 통한 검사신뢰도 제고</li> <li>○ 식품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 관리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b>1-6. 안전한 급식시스템 운영</b>		
1-6-1. 예방관리 강화 및 신속 검사·원인규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부 식중독 종합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li> <li>○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 운영</li> <li>○ 신속 검사·원인 규명 체계 구축</li> <li>○ 식중독 예방 강화</li> </ul>	복지부 식약청

세부과제	추진내용	관련부처
1-6-2. 취약시설 집중 지도·점검	○ 취약시설 집중 지도·점검	식약청
1-6-3.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위생·안전점검 강화	교과부
1-6-4.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 지자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교과부
1-6-5.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및 영양상담 등 식생활 지도 내실화	교과부
1-6-6.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위탁급식 직영전환 및 홈페이지 '급식 게시판' 운영	교과부
<b>1-7. 위기대응기반 구축</b>		
1-7-1. 위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 ○ 선제적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	농식품부 식약청
1-7-2. 위해식품 회수전담반 설치·운영	○ 위해식품 회수전담반 구성·운영	식약청
1-7-3.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구축	○ TV 자막 등 활용 위해정보 신속전달 경보제 시행 ○ 대국민 긴급 전파를 위한 통합 긴급 경보발령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b>1-8. 위해사범 단속 및 영업자 책임 강화</b>		
1-8-1. 식품위해 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활용한 체계적 단속 ○ 실시간 수사지위체계 확립 ○ 위해사범에 대한 관리강화 및 형량강화 ○ 적극적 수사·공소유지로 엄중한 처벌 유도 ○ 경제적 이익박탈 등 사후관리 철저 ○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등 단속강화	농식품부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1-8-2. 원산지 표시 및 가짜상품 단속 강화	○ 수입물품의 성분, 함량, 품질 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행위 단속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관세청
1-8-3. 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 강화	○ 수입 OEM 식품 영업자 관리강화 ○ 시설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안전위주의 자가품질검사 개선 ○ 이물보고 의무화 시행	복지부 식약청

##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평가

세부과제	추진내용	관련부처
<b>2-1. 식품위해평가의 과학성과 독립성 강화</b>		
2-1-1. 과학적 위해평가 강화	○ 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수행절차 확립	농식품부 식약청
2-1-2. 위해평가의 독립성 강화	○ 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위해평가·관리 시스템 연구	총리실
<b>2-2. 식품안전 R&amp;D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b>		
2-2-1. 식품 안전성 연구 강화	○ 식품안전성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 축산식품 안전관리 기능 지원강화 ○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내성기전연구 및 대체치료제 개발 ○ 수산물 위해요소 제어기술 개발	농식품부 식약청
2-2-2. HACCP 및 위해분석 전문인력 양성	○ HACCP 지도관 교육·훈련 확대로 지원 역량 강화 ○ 민간인 대상 HACCP 전문교육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 강화 ○ 위해분석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농식품부 식약청
2-2-3.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 검사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검토 및 검사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시험검사 전문교육 과정 운영 ○ 축산물·수산물 위생관리, 정밀검사 교육강화 ○ 농산물 정밀분석실 KOLAS인정 추진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 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세부과제	추진내용	관련부처
<b>3-1. 국민과의 식품안전 소통채널 확대</b>		
3-1-1.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정보 교류 활성화</li> <li>○ 국민참관인 제도 확대</li> <li>○ 식품안전 모니터링 망 구축.운영</li> <li>○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운영</li> <li>○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단위 안전관리 협의체로 확대,발전</li> <li>○ 농식품안전상담센터 설치.운영</li> <li>○ 식품안전행정에 민간위원 참여확대</li> </ul>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3-1-2. 소비자 대상 정보 공개 및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구매 전 안전정보 공개시스템 구축</li> <li>○ 안전성 검사정보 공개</li> <li>○ 식품안전정보 공개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li> <li>○ 소비자 정보서비스 창구일원화</li> <li>○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3-1-3. 가정에서의 식품안전·위생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li> <li>○ 가정 내 식중독예방 교육 강화</li> <li>○ 내가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li> </ul>	농식품부 식약청
<b>3-2. 식품 표시기준 합리화</b>		
3-2-1.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기준 개선 및 그린 푸드제 도입 검토</li> </ul>	식약청
3-2-2. 원산지 표시제도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식품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li> <li>○ 원산지 단속기능 강화 등 단속의 효율성 제고</li> <li>○ 과학적 원산지 판별 기반 구축</li> </ul>	농식품부

3-3. 적정한 영양성분 섭취 관리 추진		
3-3-1. 위해가능 영양성분 중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중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및 섭취 저감화</li> <li>○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 구축 및 운영</li> </ul>	식약청
3-3-2. 어린이 식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퇴출 관리강화</li> <li>○ 고열량·저영양 식품 학교매점 등 판매 금지 추진</li> <li>○ 품질인증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도입·시행</li> <li>○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표</li> </ul>	복지부 식약청
3-3-3.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li> <li>○ 수요자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및 정보교류 활성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 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세부과제	추진내용	관련부처
4-1. CODEX 등 국제적인 협력강화		
4-1-1. CODEX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DEX 국제회의 참여 및 국제 규격화 활동 확대</li> <li>○ CODEX 규격 정보공유 및 확산 활동 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4-1-2. 외국정부와 식품안전 MOU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주요 수출국과 위생약정 체결 확대</li> <li>○ 위생약정체결 확대</li> </ul>	농식품부 식약청
4-2. 식품안전 정보관리 체계 강화		
4-2-1. 식품안전정보 수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안전정보 수집 강화 및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li> </ul>	식약청
4-2-2.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처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제공</li> <li>○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li> </ul>	복지부 식약청

### 4-3. 부처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4-3-1. 식품관련 규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관련 법령정비 추진</li> <li>○ 각종 심의·협의기구에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참여 확대</li> </ul>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4-3-2. 정보 공유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관계부처간 공유체제 확립</li> <li>○ 유해물질 목록작성 및 자료, 지도·점검결과 공유</li> <li>○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li> </ul>	농식품부 식약청
4-3-3.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조정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관련 주요 제도개선</li> <li>○ 국민소통강화를 통한 신뢰제고</li> <li>○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점검</li> </ul>	총리실

### 4-4. 중앙-지방정부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4-4-1.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청 위생감시인력 지자체 이체</li> <li>○ 지자체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시도단위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li> <li>○ 지자체의 위생관리 효율성 및 관리체계 운영</li> </ul>	행안부 식약청
4-4-2. 안전성 검사에 지자체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검사능력 제고</li> <li>○ 검사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마련</li> </ul>	농식품부 식약청

**< 농식품부 소관 >**

세부과제	법령명	내 용
농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강화 (1-1-1)	해역 위생관리기준 고시제정 (예정)	○ 수산해역 위생관리 확대 - 60개 해역별 등급설정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09.11 시행예정)	○ GAP 인증제도 활성화 - GAP인증기관 관리시설 유효기간 및 지원승계규정 신설 ○ DNA 등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반 구축
친환경식품 관리방안 (1-1-5)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 개정(예정)	○ 친환경 수산물 확대 - (‘08) 7개 품목 → (‘11) 25개 품목
	농약관리법 개정(예정)	○ 밀수농약 규제강화, 농약관매기록 의무화 등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09. 4.1 시행)	○ 저농약 인증제 폐지 - 기 인증농가는 ‘15년까지 유효
	식품산업진흥법개정안(예정)	○ 유기가공식품인증제 - 인증 유효기간 및 취소규정 신설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강화 (1-1-7)	생산·출하 전단계 수산물의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예정)	○ 수산양식장 HACCP 적용 확대 -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 ○ 축산물HACCP인증지원
이력추적제 확대 (1-2-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9.11 시행예정)	○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1-5-2)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예정)	○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제 도입, HACCP 적용대상 확대 ○ 위해 축산물 수입,판매 금지 신설
안전성검사에 지자체와 협력 강화 (4-4-2)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예정)	○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을 갖춘 생산자 단체와 식품위생관련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 < 복지부, 식약청 소관 >

세부과제	법령명	내용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강화 (1-1-7)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CCP 적용업체 운영관리 철저</li> <li>○ HACCP 적용업체 지원 강화</li> </ul>
식품보관 관리방안 (1-2-3)	식품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물류창고 등의 보관 기준 마련</li> </ul>
식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 확대(1-3-1)	식품기준 및 규격고시 (‘09.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li> </ul>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방안 (1-3-3)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 재조합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li> </ul>
첨가물·용기·포장 관리방안 (1-3-4)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 포장에 대한기준·규격 고시 개정(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첨가물 안전·안심 확보 및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li> <li>○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확보 기반 강화</li> </ul>
생산지·수출지 안전관리 (1-4-1)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수입업체제도 도입</li> <li>○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li> </ul>
국내 유통단계 관리 (1-4-3)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검출 제품은 부적합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사항 제출</li> </ul>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1-5-1)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도입</li> <li>○ 부정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벌칙 강화</li> <li>○ 검사능력 ‘현장평가제’ 실시</li> </ul>
예방관리강화 및 신속검사· 원인규명체계 구축 (1-6-1)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li> <li>○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 운영</li> <li>○ 신속 검사·원인 규명 체계 구축</li> </ul>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구축(1-7-3)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자막 등 활용, 위해정보 신속전달 경보제 시행</li> </ul>

세부과제	법령명	내용
식품위해 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1-8-1)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사범에 대한 관리강화 및 형량강화</li> <li>○ 경제적 이익박탈 등 사후관리 철저</li> <li>○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등 단속강화</li> </ul>
영업자의 식품안전 책임강화 (1-8-3)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09.4.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OEM 식품 영업자 관리강화</li> <li>○ 이물보고 의무화 시행</li> <li>○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li> <li>○ 위해요소 중심의 자가품질검사 개선</li> </ul>
HACCP 및 위해분석 전문인력 양성 (2-2-2)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CCP 지도관 교육·훈련 확대로 지원 역량 강화</li> <li>○ 민간인 대상 HACCP 전문교육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 강화</li> </ul>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2-2-3)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li> <li>○ 검사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li> </ul>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3-1-1)	식품위생법 개정 ('09. 8.7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관인 제도, 소비자 감시단,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운영</li> </ul>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 개선 (3-2-1)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09.12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기준 개선 및 그린 푸드제 도입 검토</li> </ul>
어린이 식생활환경 개선 (3-3-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09.3.2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부정·불량식품 퇴출관리강화</li> <li>○ 고열량·저영양식품 학교매점 등 판매금지</li> <li>○ 품질인증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li> <li>○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표</li> </ul>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4-2-2)	식품위생법 개정 ('09.6.20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li> </ul>

## < 환경부 소관 >

세부과제	법령명	내 용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1-1-6)	먹는 물 관리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는샘물 및 약수터 관리강화</li> <li>- 먹는 샘물 품질인증 법제화</li> <li>- 약수터 과리강화(조례입법권 확대)</li> <li>○ 정수기 품질관리 강화</li> </ul>

## < 교과부 소관 >

세부과제	법령명	내 용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1-6-4)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li> <li>- (제정) 시도 16, 시군구 170</li> </ul>